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안 건 명

-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8월 23일(목)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8월 27일(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I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집행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감사담당관	483,790	483,790	-	100%

2. 세출결산 집행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감사담당관	222,046,000	201,947,700	-	20,098,300	9.1%

3.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부서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감사담당관	20,098,300	-	-	20,098,300	-	-

II 검토의견

1.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8만 37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20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90.9%에 해당하는 2억 194만 7,700원이며,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으로 2,009만 8,300원이 남았음.
-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9.1%로, 발생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009만 8,300원임.

2. 검토의견

- 검토의견으로는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만은 할 수 없으나, 일부 경우 당초 사업계획의 부적정 또는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높은 불용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 통하여 재차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뿐만 아니라 장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결산심사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드시 피드백 되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를 2015년도부터 시행하면서 재개발이 많은 지역으로 재개발 관련민원과 신축 공사 피해관련 민원 등 주민과 건축 관계자 피해 보상 문제 등 구청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나,
- 민원대비 옴부즈만 위원이 소수로 진행하다보니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복지관련 민원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미뤄볼 때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 옴부즈만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구민의 복지문제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